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784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 강선우·한병도·한정애

임호선 · 윤준병 · 김영호

서미화・김 유・강준혁

허종식 • 문정복 • 안규백

허 영·한민수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 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되어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022년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금액이 권고금액보 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 간 지 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

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등과 제3항에 따른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등에"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립정착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자립지원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② (생 략)	제38조(자립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
	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
	<u> 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u>4</u>
절차와 방법 <u>등에</u> 필요한 사항	<u>등</u> 과 제3항에 따른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등에